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11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2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춘천)2015누101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1심판결	춘천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5구합4400 판결
변론종결	2016. 5. 2.
판결선고	2016. 6. 13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5. 5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,759,110원, 지방교육세 275,91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11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명수

판사 박병규

판사 이희경